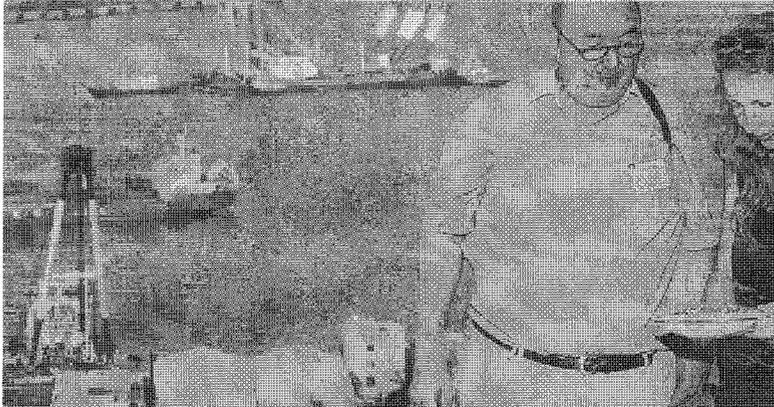


특정지역도 지적재산권이다

-농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 '금산, 풍기의 인삼' 처럼 어떤 제품이 일반인에게 널리 명성을 가질때 생산지의 지리적 명칭은 상표와 같이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상표권 등과 같이 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된다.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1. 지리적 표시제도 추진상황

가. 도입경과

- 94.04.15 : WTO/무역관련지적 재산권에관한협정(TRIPS) 제정
- 96.10.29 : 한·EU 기본협력협정체결(지리적표시 보호 요구)
- 99.01.21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지리적표시 보호제도 도입)
- 00.09.26 :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 고시(인삼 및 인삼제품, 녹차)
- 02.01.25 : 지리적표시 제1호 등록(보성녹차)

02.09.10 : 지리적표시 등록대 상품목을 전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확대

나. 등록현황 (02.11월 현재)

- 등록품목 : 1품목(보성녹차)
- 등록일/등록자 : 02.1.25/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대표 : 최연호)
- 등록명칭(한글/영문) : 보성녹차(우전, 곡우, 세작)/Boseong Green Tea
- 등록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의 보성군

2. 지리적표시 제도의 개요

가. 의미

· 어떤 상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 지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우수하거나 특성 있는 품질이나 맛 등을 형성하고, 이것이 일반인에게 널리 명성을 가질 때 이 생산지의 지리적 명칭은 상표와 같이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상표권 등과 같이 개인(지역)의 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됨

나. 정의

·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당해 상품에 그 특정지역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보호해 주는 제도

(예) 보르도(지역명)+포도주(품목명), 다르젤링(지역명)+홍차(품목명), 보성(지역명)+녹차(품목명), 돌산(지역명)+갯김치(품목명)

다. 특징

· 지리적표시는 지리적명칭(특정한 지역, 지방, 산, 하천의 명칭)이어야 함

(지리적명칭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브랜드는 상표로는 가능하나 지리적표시의 대상은 아님)

· 지리적표시는 품질, 명성을 가진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함

(모든 지리적명칭이 지리적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명성이 있어야 함)

· 지리적표시는 상품과 생산지역

간의 품질연계가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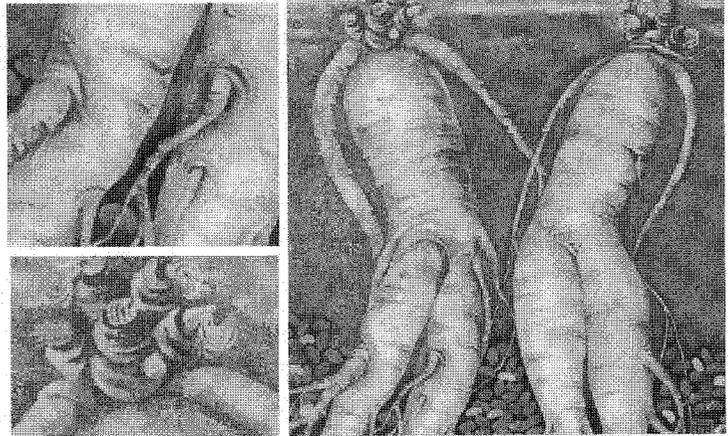
- 지리적표시는 해당지역 내에서 생산, 가공이 이루어져야 함
(유명한 지리적명칭이라 하더라도 상품과 생산지역의 지리적 요인 간에 연계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이 아님)

라. 기대효과

- 생산자는 명성있는 지역명을 상표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음에 따라 질 좋은 농산물을 선택하며 구매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내에서 농산물의 생산·조제·가공의 전과정이 수행됨으로서 농업·농외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이농방지 및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발전을 기할 수 있고,
- 국가는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의 보호와 외국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 및 국산농산물을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됨

마. 보호제도의 생성 배경

- 지역, 하천, 산, 해역 등의 특정한 지리적 명칭은 동 지리적 권역 내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 특히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맛, 향, 색 등 품질 특성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고 상품의 가격형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정당한 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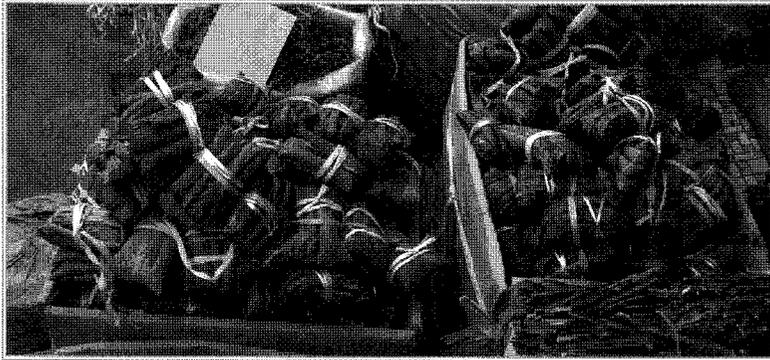
적 표시 사용자의 보호는 오랫동안 제도화되지 못하였음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1883)에서 최초로 원산지 표시(indication of origin)의 개념으로 지리적 표시를 보호
-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1891)에서는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의 개념으로 지리적 표시를 규정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를 강화함
- 원산지 명칭 보호 및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1958)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원산지 명칭(appellation of origin)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지금의 EU규정(1992)이나 WTO/TRIPs규정(1994)의 지리적 표시 개념으로 발전

바. 유사개념과의 구분

- 상표와의 구분
-상표는 특정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의 표장을 의미(상표

법)
-상표와 지리적표시는 둘 다 타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식별표지로서 상표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나 지리적표시는 반드시 지역명을 사용
-상표는 특정상품의 품질, 명성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특성에 기인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지리적표시는 이를 본질적 요건으로 함
-상표는 특정기업에 대해 배타적·독점적 재산권을 부여하는 반면, 지리적표시는 특정지역 또는 지방의 지리적명칭에 대한 일종의 단체사용권임
· 원산지표시와의 구분
-원산지는 당해물품이 생산, 제조, 가공된 국가를 의미함. 예외적으로 국산농산물의 경우 시·군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수입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함



-원산지표시는 국명 또는 행정구역명(시·군)을 표시하나, 지리적표시는 국명, 행정구역명(시·군·읍·면·마을), 특정지역(지리산, 낙동강 등) 모두 표시 가능

-원산지표시는 품질과 연계성이 없으나 지리적표시는 명성이나 특성과 지역명칭이 연계됨

· 품질인증과의 구분

-품질인증은 특정품목이 품질의 우수성, 생산조건 등 일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것

-둘 다 품질의 우수성을 등록요건으로 하나 품질인증은 상품의 유명성과 품질연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반면 지리적표시는 이를 핵심요소로 함

-품질인증은 일정기간동안(1년) 인증하고 갱신해야 하나, 지리적표시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항구적으로 유효

3.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 보호규정

가. 상표법

· 상품에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음(6조①)

· 현저한 지리적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음(6조①)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음(7조①)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허위의 원산지표지를 하거나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와 상품이 생산·제고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2조)

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정(3조)

· 상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

시·광고가 됨(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II-10조)

라. 농산물품질관리법

· 등록기준(시행령 15조)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

-당해 품목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당해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 등

· 신청자격(시행령 17조)

-특정지역안에서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함. 다만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지역 내에 1인만 존재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 등록신청(규칙 16조)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생산계획서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 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서

등록절차



신청 대상품목 (시행령16조 및 농림부 고시 2002-41호)

구분	유형	대상품목
원료농산물	곡류	기장, 메밀, 밀, 보리, 쌀(현미 포함), 수수, 옥수수, 율무, 조 등
	두류	강낭콩, 검정콩, 녹두, 대두, 땅콩, 동부, 완두, 팥 등
	서류	감자, 고구마 등유지류 들깨, 참깨, 유채 등
	채소류	가지, 고들빼기, 고추, 깻잎, 당근, 더덕, 도라지, 두릅, 딸기, 마늘, 무, 배추, 생강, 수박, 순무, 양파, 연근, 참외, 토란, 토마토, 파, 호박 등
	약재류	감초, 결명자, 구기자, 당귀, 복분자, 산수유, 오가피, 오미자, 둥굴레, 익모초, 작약, 황기, 황화씨 등
	과실류	감, 감귤, 대추, 매실, 모과, 배, 복숭아, 사과, 살구, 앵두, 유자, 자두, 포도 등
	버섯류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싸리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 등
	견과류	도토리, 밤, 은행, 잣, 호두 등
	인삼류	수삼 등
	산채류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등
	화훼류	동양란 등
	식육류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 등
	우유류	우유 등
	알류	계란, 오리알 등
임산물류	고로쇠수액, 자작나무수액, 죽순, 찹 등	
기타	꿀, 녹용, 건조누에 등	
농산물 가공품	과자류	빵, 떡, 한과, 엿, 스낵과자 등
	두부류	두부, 묵 등
	유지류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등
	다류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등
	음청류	곡류 음료, 두류 음료, 채소 음료, 과실 음료 등
	면류	면, 국수 등
	주류	과실주, 리큐르, 소주, 약주, 일반증류주, 청주, 탁주 등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등
	인산제품류	홍삼, 백삼, 태극삼, 기타 인삼가공품 등
	김치류	김치, 절임류 등
	축산제품류	순대, 육포 등
	기타식품류	메주, 식초, 전분, 콩나물, 숙주나물 등
	임산물류	목공예품, 죽세공품 등
	기타가공품	삼베, 모시, 화문석 등

기억특집 2

〈참고〉 지리적표시 등록 가능품목 조사현황

지역	유형	품목	종류	비고
서울	주류	전통주	서울송절주	서울(1)
부산	주류	전통주	금정산정토산주	부산(1)
대구	과일류	사과	대구사과	대구(1)
강원	곡류	메밀	봉평메밀	강원(13)
강원	곡류	쌀	철원쌀	
강원	과자류	빵	안흥찐빵	
강원	두부류	두부	강릉초당두부	
강원	면류	막국수	춘천막국수	
강원	버섯류	송이버섯	양양송이버섯	
강원	서류	감자	대관령감자	
강원	식육류	닭고기	춘천닭갈비	
강원	약재류	황기	정선황기	
강원	약재류	당귀	평창당귀	
강원	주류	전통주	강원옥로주	
강원	주류	전통주	평창감자술	
강원	주류	전통주	홍천옥선주	
경기	견과류	잣	가평잣	경기(15)
경기	곡류쌀	이천쌀		
경기	곡류쌀	여주쌀		
경기	곡류쌀	김포쌀		
경기	곡류쌀	강화쌀		
경기	과일류	복숭아	장원호복숭아	
경기	기타가공품	화문석	강화화문석	
경기	두류	콩	장단콩	
경기	식육류	쇠고기	포천이동갈비	
경기	식육류	쇠고기	개군한우	
경기	인삼제품류	인삼류	강화인삼	
경기	주류	전통주	김포문배주	
경기	주류	전통주	포천이동막걸리	
경기	주류	전통주	용인옥로주	
경기	축산제품류	순대	백암순대	
경남	과일류	단감	진양단감	경남(6)
경남	과일류	곶감	산청곶감	
경남	과자류	한과	합천한과	
경남	다류	녹차	화개녹차	
경남	주류	전통주	가지산송엽주	
경남	주류	전통주	함양지리산국화주	
경북	과일류	곶감	상주곶감	경북(15)
경북	과자류	엿	울릉도호박엿	
경북	과자류	빵	경주황남빵	
경북	기타가공품	삼베	안동포	
경북	기타식품류	곰탕	현풍곰탕	
경북	인삼제품류	인삼류	풍기인삼	
경북	주류	전통주	경주교동법주	
경북	주류	전통주	봉화선주	
경북	주류	전통주	경주황금주	
경북	주류	전통주	문경호산춘주	
경북	주류	전통주	안동소주	
경북	주류	전통주	달성하향주	

경북	주류	전통주	김천과하주	
경북	주류	전통주	선산약주	
경북	채소류	참외	성주참외	
전남	과일류	유자	고흥유자	전남(13)
전남	과일류	배	나주배	
전남	과자류	엿	창평쌀엿	
전남	기타가공품	삼베	보성삼베	
전남	김치류	김치	돌산갓김치	
전남	다류	녹차	보성녹차	
전남	버섯류	표고버섯	장흥표고버섯	
전남	임산물류	죽세공품	담양죽세공품	
전남	주류	전통주	진도홍주	
전남	주류	전통주	선운산복분자주	
전남	주류	전통주	낙안사삼주	
전남	주류	전통주	지리산오가피주	
전남	채소류	수박	무등산수박	
전북	기타가공품	한지	전주한지	전북(9)
전북	기타식품류	비빔밥	전주비빔밥	
전북	임산물류	제기	남원제기	
전북	장류	고추장	순창고추장	
전북	주류	전통주	전주이강주	
전북	주류	전통주	송죽오곡주	
전북	주류	전통주	김제송순주	
전북	주류	전통주	여산호산춘	
전북	채소류	수박	고창수박	
제주	식육류	돼지고기	제주흑돼지고기	제주(2)
제주	주류	전통주	제주오메기술	
충남	과일류	포도	임장포도	충남(13)
충남	기타가공품	모시	한산모시	
충남	약재류	구기자	청양구기자	
충남	인삼제품류	인삼류	금산인삼	
충남	주류	전통주	면천두견주	
충남	주류	전통주	청양구기자주	
충남	주류	전통주	계룡백일주	
충남	주류	전통주	한산소곡주	
충남	주류	전통주	가야곡왕주	
충남	주류	전통주	아산연엽주	
충남	주류	전통주	금산인삼주	
충남	채소류	고추	청양고추	
충남	축산제품류	순대	병천순대	충북(9)
충북	과일류	호두	영동호두	
충북	과일류	대추	보은대추	
충북	과일류	사과	충주사과	
충북	주류	전통주	청원신선주	
충북	주류	전통주	옥천한주	
충북	주류	전통주	청주대추주	
충북	주류	전통주	중원청명주	
충북	채소류	마늘	단양마늘	
충북	채소류	고추	음성고추	

※ 상기 등록가능품목은 개략적 조사결과이며 가감될 수 있음